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91
----------	-------

발의연월일 : 2026. 9. 1.

발 의 자 : 박용갑 · 윤준병 · 어기구
정준호 · 김병주 · 서영교
서영석 · 조인철 · 한민수
허영 · 노종면 · 이용우
이해식 · 서삼석 · 진성준
의원(15인)

제안이유

최근 한류문화 확산에 따라 우리 식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수출 상대국의 통관단계에서 식품의 기준규격이나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인한 부적합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에게 수출 상대국의 식품 기준규격, 표시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식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의 식품 안전 규제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우리기준과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등과 국제협력이 필요하나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이에 관한 근거가 없어 이를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이러한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일관

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기관으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립된 식품안전정보원이 수행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미 사용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원료물질을 재생원료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인정받은 사항 중 경미한 변경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원료가 인정받은 대로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조사평가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 가. 재생원료에 관해 인정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재생원료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 2)
- 나. 외국의 식품등 규제에 관한 업무 및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의 사업으로 정하여 수행토록 규정함(안 제67조·제68조)
- 다. 식품등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의 식품등 규제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그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해외진출 기업 등에 제공하며, 외국의 식품등 규제 관련 고충 사항을 발굴 및 해소 지원을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관 및 기업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90
조의3 신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재생원료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제6항에 따라 인정된 재생원료가 인정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지 여부를 조사·평가할 수 있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2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인정”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인정 또는 변경인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인정을”을 “인정 또는 변경 인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에 따라 변경 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의2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절차 등”을 “절차, 조사·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제49조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 중 제68조제1항 각 호”를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업무 중 제68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9조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업무
2.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
3. 제90조의3에 따른 외국의 식품등 규제에 대한 대응 및 해외진출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제6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운영을 위한 지원
9. 외국의 식품등 규제에 대한 대응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등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1. 그 밖에 식품이력추적관리업무, 식품안전정보에 관한 업무, 외국
의 식품등 규제에 대한 대응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제81조제1호의3 중 “제7조제5항·제9조제5항·제9조의2제6항”을 “제7
조제5항·제9조제5항·제9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90조의3 및 제90조의4를 각각 제90조의4 및 제90조의5로 하고, 제90
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3(외국의 식품등 규제에 대한 대응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은 외국의 식품등 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
고 식품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1. 식품등 규제 관련 외국정부·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운
영
2. 외국의 식품등 규제에 관한 조사·연구
3. 외국의 식품등 규제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해외시장 진출
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4. 외국의 식품등 규제 관련 고충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을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참여하
는 협의체 구성·운영
5. 식품등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
증의 획득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6. 그 밖에 외국의 식품등 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고 식품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외 인증의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제1호의2 중 “제9조의2제5항”을 “제9조의2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포된 날부터 국제협력, 해외진출 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위탁 등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신 설>

<신 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항에 따른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한 같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재생원료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제6항에 따라 인정된 재생원료가 인정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지 여부를 조사·평가할 수 있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⑨ ----- 제6항-----

정한 사항 외에 재생원료의 인정 절차, 인정서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7조(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탁을 받아 제49조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 중 제6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⑤ (생략)

제68조(정보원의 사업) ①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7. (생략)

8. 그 밖에 식품안전정보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 절차, 조사
· 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
-----.

제67조(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① -----
-----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업무 중 제68조제1항 각 호-----

-----.

1. 제49조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업무

2.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

3. 제90조의3에 따른 외국의 식품등 규제에 대한 대응 및 해외진출 지원 등에 관한 업무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8조(정보원의 사업)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지원

<u>정하는 사업</u>	
<u><신 설></u>	<u>9. 외국의 식품등 규제에 대한</u> <u>대응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u> <u>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보</u> <u>제공 등</u>
<u><신 설></u>	<u>10.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u> <u>라 위탁받은 업무</u>
<u><신 설></u>	<u>11. 그 밖에 식품이력추적관리</u> <u>업무, 식품안전정보에 관한 업</u> <u>무, 외국의 식품등 규제에 대</u> <u>한 대응 및 해외진출 지원에</u> <u>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u> <u>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81조(청문) -----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
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	-----
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1의2. (생 략)	1.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7조제5항·제9조제5항	1의3. 제7조제5항·제9조제5항
·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인정	· 제9조의2제8항-----
의 취소 또는 제18조제7항에	-----
따른 안전성 승인의 취소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90조의3(외국의 식품등 규제에</u>

대한 대응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외국
의 식품등 규제에 대한 대응시
책을 마련하고 식품등의 해외시
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식품등 규제 관련 외국정부
·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2. 외국의 식품등 규제에 관한
조사·연구

3. 외국의 식품등 규제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해외시
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4. 외국의 식품등 규제 관련 고
충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을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
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운영

5. 식품등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증의 획득을 위한 행
정적·기술적 지원

	<u>6. 그 밖에 외국의 식품등 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고 식품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u> <u>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u> <u>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외 인증의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90조의3 · 제90조의4</u> (생략)	<u>제90조의4 · 제90조의5</u> (현행 제90조의3 및 제90조의4와 같음)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	제95조(벌칙) ----- -----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생략)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2항·제9조제2항·<u>제9조의2제5항</u>에 따른 인정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 2. ~ 5. (생략)	----- ----- -----. 1. (현행과 같음) 1의2. ----- ----- ---<u>제9조의2제6항</u>----- ----- ----- 2. ~ 5. (현행과 같음)
--	--